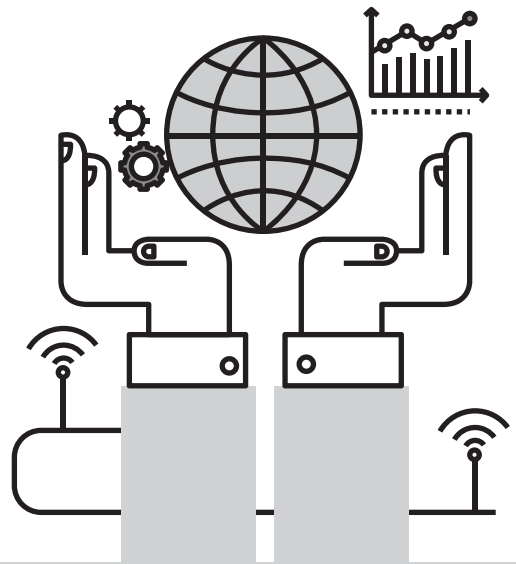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 지원정보

CONTENTS

- ① 중소기업 정책 및 동향
- ② 창업·벤처
- ③ 인력
- ④ 금융
- ⑤ 연구개발(R&D)
- ⑥ 수출/판로
- ⑦ 소상공인/전통시장
- ⑧ 기타



7월중에는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01

중소기업 정책 및 동향

㉠ 청년, 소상공인 상가임대료 부담완화 업무협약 체결(6.7, 중기부, 국토부)

- LH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임대료 50~80% 인하한 조건으로,
 - 최대 1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희망상가' 공급 ('18.6~)
- 청년, 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및 경영교육, 컨설팅 제공 등

㉡ 비수도권 지역우수기업 적극 육성(6.8, 중기부)

- 중기부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가 '지역우수기업' 181개사 선정
 - 선정된 기업은 기술사업화, R&D, 정책자금 등 정부, 지자체, 민간이 스크럼 방식으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의결 (5.28, 국회 의결)

- 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업무에 화재예방, 안전 관리 업무 명확히 규정
 -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 조직 책임성 및 안전 관리 강화 예상
- 시·도 단위 전통시장 특성화 및 연계·관리하도록 광역 단위 상권관리기구 설치 근거 마련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의결 (5.28, 국회 의결)

-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2배로 상향 조정
 - 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 시장을 활성화, 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기술탈취예방 '법무지원단' 발족(6.11, 중기부)

- 중기부, 서울·대전 변호사회, 변리사회 소속 변호사·변리사 90명으로 구성
 - 기업과 1:1 매칭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하며,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 수행

㉥ '백년가게 육성 방안' 발표(6.18, 중기부)

-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 영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
 - 홍보·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주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북지역 신설 (6.28, 중기부)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충북지역에 1개 신규로 개소하고 청년창업자 30명에게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중진공 직접 운영 방식과 병행
 - 신설 청년사관학교는 민간이 창업자 양성 주도 및 중진공은 창업공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02

창업·벤처

1 충북대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예비) 창업팀 2차 모집 공고

- (개요)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팀의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 (대상)예비창업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1억원)
 -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 창업 인프라
- (일시) '18.7.2 공고
- (신청 및 문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 충북대창업지원단(261-3444/3718), 창업지원통합콜센터(1357)

2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일반인 창업교육

- (개요) (예비)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실천창업강좌 제공
-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대표
- (지원내용)
 - 교육비 무료
 - 실천 창업강좌 및 멘토링 제공
- (기간) '18.7.14~8.11 매주토요일 40시간
- (신청 및 문의)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261-3719)

3 청년 창업 희망드림 우대 대출

- (개요)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저리 대출
- (대상) 신보, 기보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만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
- (대출금리) 대출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	신규일~1년	2년~만기일
일반대출 3년 일시상환방식	연 0.5%	연 1.5%

- (대출한도) 동일기업당 최대 3억 이내로 신보, 기보의 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일시) ~ 자금소진 시(전국 2,000억원)
- (문의) KB 국민은행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

4 먼데이피칭

- (개요) 스타트업의 기술, 제품, 인적 역량 등 회사의 경쟁력을 소개하는 자리로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 (대상) 예비 및 창업자(7년미만)
- (지원내용) 혁신센터 '내부 크레딧심의회' 통과시, 기업별로 최대 3,000만원(credit)지원
 - 특허분석 전략지원/출원 지원
 - 상품화 엔지니어링 지원(시제품 제작지원 포함)
 - 비즈니스 모델링 지원
 - Go Global 프로그램 지원
 - 마케팅 지원(디자인 등)
- (일시) 상시
- (신청 및 문의)
 - 충북창조경제혁신 홈페이지(ccci.creativekorea.or.kr/chungbuk)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043-710-5956)



1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협약 안내

-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8가지* 제도 중 하나 이상을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하기로 근로자와 협약하는 제도
 - * (경영성과급, 임금상승률,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직무발명보상, 우리사주, 스톡옵션, 사내근로복지기금)
- (협약체결 방법) 성과공유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다운받아 기업대표 및 근로자대표 서명 후 업로드 하면 협약 완료
 -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 (우대혜택)
 - 중기부 지원사업(정책자금, R&D 등 44개 사업) 선정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지표에 최대 20점 부여 등
- (신청 및 문의)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9)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 (지원내용) 청년취업자와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 3년 만기 시 적절한 공제금 전액 3,000만원+이자를 청년취업자에게 지급
- (신청기간)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 기업에서 적립하는 기업기여금 60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 되는 750만원에서 적립되며, 기업의 별도 부담금 없음
- *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 알림마당 → 공지 사항 참조
- (신청 및 문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350)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235-2884)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30-5309)

3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목돈 3,000만원+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주체별 공제납입금 납입 구조〉
 - 청년 : 5년간 720만원(월 최소 12만원x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원(월 최소 20만원x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원(3년간 7회 분할 적립)
- * 기업기여금(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일반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 중기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 시 우대 등
- (신청기간)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기업 : 중소·중견기업 → 공지사항 참조

- * 부동산업,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캠핑 및 베타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 근로자 :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최대 만 39세)
- *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 알림 마당
- (신청 및 문의)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6-3172~6)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30-5309)

4 2018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1년간 최대 300만원 기업지원
- * 인턴기간: 45만원/월(최대 3개월 135만원지원)
- * 계속고용: 55만원/월(최대 3개월 165만원지원)
- (신청기간)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기업 : 4대 사회보험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업장
- (신청 및 문의)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043-235-2884)



1 긴급경영안정자금

- (개요)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SI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횡수제한 적용 예외

●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자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근로시간 조기 단축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확인)의 고용관련 비용(인건비 등)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별도 운용

●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SI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은 연 3.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1억원 미만 대출 기업은 '기업자율 상환 제도' 선택 가능

〈 기업자율 상환제도 〉

● (제도내용)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제한사항) 대출 이후 1~3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4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상환 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환)

●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은 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

●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 (문의) 중진공충북본부(043-230-6821)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반기, 직전연동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05

연구개발 (R&D)

※ 2018년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신청 접수

연번	사업명	접수기간
1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8. 6. 1~
2	○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3	○ '18년도 2차 산학연협력(첫걸음·도약) 기술개발사업 신청 접수	'18. 7. 2~7. 16
4	○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18. 5. 31~7. 13
5	○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6	○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7	○ 2018년도 3차 R&D기획지원사업	'18. 6. 28~7. 19
8	○ '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	연중
9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	연중
10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연중

※ 세부사항은 관련 공고문 등 참고

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개요) 제조 소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
- (지원분야)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 시스템(PLM),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 관리시스템(ERP) 등
- (지원액/한도)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0.5억원 지원
- (신청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기간) 6.1~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 (문의) 충북중기청(043-230-5332)
스마트공장추진단(02-6050-2777)

2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 (개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 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 연동
 - * 제품개발, 수주관리, 자원조달관리, 생산계획관리, 생산 지시 및 생산관리, 물류관리, 재고관리, 고객(공급사슬)관리, 에너지·안전관리, 빅데이터(클라우드) 관리 등
- (지원액/한도) 최대 1억원 지원
 -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내 50% 매칭,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매칭
-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신청기간) 6.1~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충북중기청(043-230-533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757,0758)

3 2018년도 2차 산학연협력 '첫걸음·도약과제' 신청 접수

- (개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금액/한도) 1억원이내, 최대 1년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기간) '18.7.2(월)~7.16(월)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tech.go.kr)
- (문의) 충북중기청(043-230-5346),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4 2018년도 2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국내 수요처·해외수요처·민관공동투자) 신청 접수

- (개요) 국내·외 수요처(대·중견기업 등) 및 투자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제품개발을 지원



• (지원액/한도)

구분	지원한도	정부지원 비율
국내수요처	최대 2년, 5억원	60%
해외수요처	최대 2년, 5억원	65%
민관공동투자	최대 2년, 10억원	75%

- (신청자격)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추천서 또는 개발요청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신청기간) 5.31(목)~7.1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문의) 충북중기청(043-230-5333),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5 2018년도 3차 R&D 기획지원 신청 접수

- (개요)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 멘토링과제(초보형) : R&D사업계획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저변확대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 전략과제(전략형) : 미래 유망기술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지원금액/한도)
 - (멘토링과제) 총 사업비 80%이내, 최대 2개월, 5백만원,
 - (전략과제) 총 사업비 75%이내, 최대 4개월, 25.5백만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전략과제)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멘토링과제)
- (신청기간) '18.6.28(목)~7.19(목)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문의) 충북중기청(043-230-5348),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6 '18년 하반기 R&D 기술개발사업 신청 및 사업 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실시

- (목적) R&D 수행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신청 안내 및 효율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배양
- (대상) 충북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모든 기업 참여 가능)
- (일시/장소) (중부권) 7월 5일(목) 14:00~16:00 충북대학교 E8-2동 202호
 -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 공과대학 E8-2동
- (북부권) 7월 10일(화) 14:00~16:00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강의동 102호
 - * (주소)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강의동(U10)
- (남부권) 7월 11일(수) 14:00~16:00 충북도립대학교 미래관 소회의실 404호
 - * (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학길 15 미래관
 - * 상기 교육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교육전일까지(현장접수도 가능)
- (신청방법) 충북중기청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kyhwa71@korea.kr) 제출
- (문의) 충북중기청(043-230-5348)

7 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신청 접수

- (개요)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
- (지원금액/한도) 3~7천만원 이내, 최대 1년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기간) 연중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문의) 충북중기청(043-230-5346),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8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신청 안내

-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 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제품) 신기술 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 제품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21종)
 - ※ 대상품목 상세내용은 중소기업청 고시 참조(www.mss.go.kr ▶ 정부공개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 (처리절차) 성능인증신청* → 적합성심사 → 규격확인 → 공장심사 → 성능인증서 발급
 - *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관할지발청 신청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공공구매정보망(SMPP)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 기업부담금 없음
- (우대사항)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시 가점부여(최대5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배정 및 뿌리산업육성 자금 대출 금리감면(최대1.0% 감면) 등
- (문의) 충북중기청(043-230-5331)

9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 신청 안내

- (개요)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촉진
- (대상기술)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 가공(표준산업분류코드 참조)
 - * 대상기술 상세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6호 핵심뿌리기술고시 참조(www.root-tech.org)
- (처리절차)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회원가입 → 온라인 자가진단 → 지정신청서등록 → 현장평가 → 전문 기업지정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root-tech.org)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평가 관련기업부담금 없음

- (문의) 충북중기청(043-230-5348)
- (지원분야) 제품설계 ·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 제어기 · 센서 등 구입 지원

06

수출/판로

1 '18년 2차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및 수행 기관 모집

-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집규모)
 - 참여기업 : 9개 사업, 약 1,800개사 내외
 - 수행기관 : 12개분야, 선발기업수 제한 없음
- (참여기업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바우처 세부사업 및 지원금액)

구분	세부사업명 (기업수)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수출바우처 통합형	수출첫걸음 지원(1개사)	·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 · 수출중단기업	1,400만원	70%
	월드챔프 육성 (50개사)	· (Pre 월드챔프) 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 (월드챔프) 한국형 히든 챔피언선정기업 · (Post 월드챔프) 월드 챔프 육성 사업 졸업기업	5,600만원 7,500만원 4,500만원	70% 50% 30%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30개사)	· (Pre 수출중견) 내수 중견기업, 예비중견기업 · (수출중견) 중견기업 · (Post 수출중견) 수출 중견 졸업기업	6,000만원 7,500만원 4,500만원	60% 50% 30%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500개사)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희망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 회 (연간 최대 2회)	정액 보조
	수출성공 패키지 (900개사)	· (수출기업화) 내수 기업 및 수출 10 만불 미만 · (수출고도화) 수출 100만 불 미만	· (수출기업화) 최대 2,000만원 · (수출고도화) 최대 3,000만원	50% ~ 70%



구분	세부사업명 (기업수)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수출 바우처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100개사)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으로 최근 4개년간 ①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20%이상 성장하거나(수도권 외 지방기업은 15%이상) ②수출액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1억원	50 ~ 70%
	아시아하이웨이 (50개사)	· 중국, 아세안 또는 인도 지역에 既 진출 하였거나 신규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1억원	50 ~ 70%
통합 형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50개사)	· 16년 이후 지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유효한 기업(456개 업체)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1억원이내)	50 ~ 70%
	해외지재권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35개사)	· 수출(예정) 중소기업으로서,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 중인 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기업	최대 2,800 만원	70%

- (수행기관 지원요건)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한 해외민간 네트워크
- (수행기관 서비스내용)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조사/일반컨설팅 등 12개 분야
-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신청방법) 수출바우처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18. 6. 29(금) 10시 ~ 7. 18(수) 18시
- (신청문의) 충북중기청 041-230-5388

2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 (개요) 해외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소요 비용 일부(80%) 지원
- (대상) 충북 지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천만원 한도, 3건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11.30
- (신청 및 문의)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 청주상공회의소(043-229-2732)

3 수출기업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 (개요) 해외시장정보 획득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도모
- (신청자격) 충북 지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시장조사* 지원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시장조사, 원부자재공급선조사 등
- (신청기간) ~ 11.30
- (신청 및 문의)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 충북코트라지원단(043-217-0016)

4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 (개요) KOTRA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의 해외지사처럼 활용토록 지원
- (대상) 충북 지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연 400만원 한도 지원
- (신청기간) ~ 8.31
- (신청 및 문의)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41)

5 수출기업 외국어통번역 지원

- (개요) 건국대학교번역센터 랭스테크활용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대상) 충북 지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통역 및 번역 연 200만원 한도 지원
- (신청기간) ~ 9.30
- (신청 및 문의)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32)

6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사업

- (개요) 중소기업의 개별 해외 출장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다변화 및 수출확대 도모



- (대상) 충북 지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해외 세일즈 출장 프리미엄 서비스, 바이어 상담주선
- (신청기간) ~ 10.31
- (신청 및 문의)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 충북코트라지원단(043-217-0016)

7 무역보험(단체보험) 지원사업

- (개요) 해외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경감 통한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신청자격) 수출 3천만불 미만 중소기업
- (지원내용) 수출단체보험 가입지원
- (신청기간) ~ 11.30
- (신청 및 문의)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043-236-1301)

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개요) '18년 하반기(6~11월)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시 1부스(9~12m²) 임차료 일부 지원
- (대상) 충북 지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500만원 한도 지원
- (신청기간) ~ 11.30
- (신청 및 문의)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043-236-1171~3)

9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개요) 수출확대를 위해 우체국 운영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 (대상) 충북 지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EMS 물류비 12% 할인 + 물류비용 50% 지원
- (신청기간) ~ 10.31

- (신청 및 문의)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42)



1 7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 운영자금(대리대출) 및 일정

구분	자금명	일정
특수 목적 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간접자금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간접경영안정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	상시접수

- 운영자금(직접대출) 및 일정

구분	자금명	일정
일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7.9(월)~7.13(금)

- (자금 문의처)
- 소진공 지역센터, 기업마당(☎1357)

2 2018년 상권활성화 사업

- (개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관리사업 (환경개선, 활성화 등)을 추진, 소상공인 및 상권의 자생력 확보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 구역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 (사업기간)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
- (지원내용) 쇠퇴한 상권 개선 및 특색 있는 상권 조성 등을 지원(상점가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테마존 운영 등)



- (신청기간) '18. 5. 29.(화) ~ 7. 31.(화)
- (신청 및 문의)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 (온나라시스템)로 “소진공”에 접수
 - 문의 : 소진공(042-363-7772, 7971)

3 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 (개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 (신청대상) 도소매·음식업 영위 사업체 중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지원내용) 맞춤형 컨설팅, 교육, 금융 대출 우대,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 (신청기간) '18. 6. 19. ~ (상시 신청·접수)
 -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신청 및 문의) 소진공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우편 접수
 - 문의 : 소진공(042-363-7981~85)

4 2018년 나들가게 이행보증지원 안내

- (개요)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나들가게와 상품공급사간 상품 거래 시 외상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 지원
- (신청대상) 100여개 나들가게(선착순 지원)
 - * 점주 자부담금 10%
- (지원내용) 최대 1천만원 한도의 보증 수수료 2.647%(264,700원/점포당) 지원
- (신청기간) '18. 5. 23(수) ~ 예산 소진 시
- (신청 및 문의) ‘나들가게 확인서’ 발급 후 SGI서울보증 전국지점 방문
 - 문의 : 확인서 발급 문의
(나들가게 콜센터 : 1566-9082)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문의
(SGI서울보증 지점 : 1570-7000)

5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개요) 영세한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유도
- (신청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 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기준으로, 1등급이 최저보험료임
-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 (연간 124,800원)를 2년간 지원
- (신청기간) 상시 신청·접수(선착순 마감)
- (신청 및 문의) 소진공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 문의 : 청주소진공(043-234-1096)



1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찾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지원 안내

- (지원내용)
 - 비즈니스지원단 : 12개 분야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시 무료상담 지원
 - 현장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단기간(1일~최대 7일)에 애로해결
 - 일자리안정자금 :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이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일안자금 안내 및 신청방법 설명
- (대상)
 - 상담 :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일안자금 : 소상공인 협단체, 지자체 등
- (지원분야) 창업, 법무, 금융, 인사, 기술, 회계(세무), 경영전략, 정보화, 생산관리, 마케팅, 수출입, 노무



- (신청기간) 상시
- (문의) 충북중기청 043-230-5380
비즈니스지원단 043-230-5307~5308

2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거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습니다!!!

- (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선
- (발굴분야) 법령·행정규칙 규정 또는 정부·공공기관의 행정 행위를 포함한 모든 분야
 - * 창업 및 고용·일자리 관련 분야 중점 발굴
- (제출기간) 상시
- (제출방법) 해당양식*에 작성 후 이메일(kbs9704@korea.kr) 송부
 - * (양식) 충북중기청 홈페이지-공지사항 63번
- (문의) 충북중기청 043-230-538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 할인

온누리상품권이란?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입니다.
 - * 전국 1,5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 개인현금 구매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30만원 한도 구매 가능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MG새마을금고,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 전북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 국민은행
- (구매방법) 취급은행을 방문해 개인은 현금 및 공무원복지카드(개인신용카드 사용불가), 법인은 현금 및 법인카드로 구매(신분증 지참)
- (상품권종류) 지류 (5천원, 1만원, 3만원권), 전자상품권 (5만원, 10만원권)
- 전통시장사용금액 연말정산시소득공제추가(현금영수증 발행)
- 온누리상품권은 구내식당 식자재 구매, 워크숍 준비, 불우이웃돕기, 직원 포상금 지급 등에 다양하게 활용





이달의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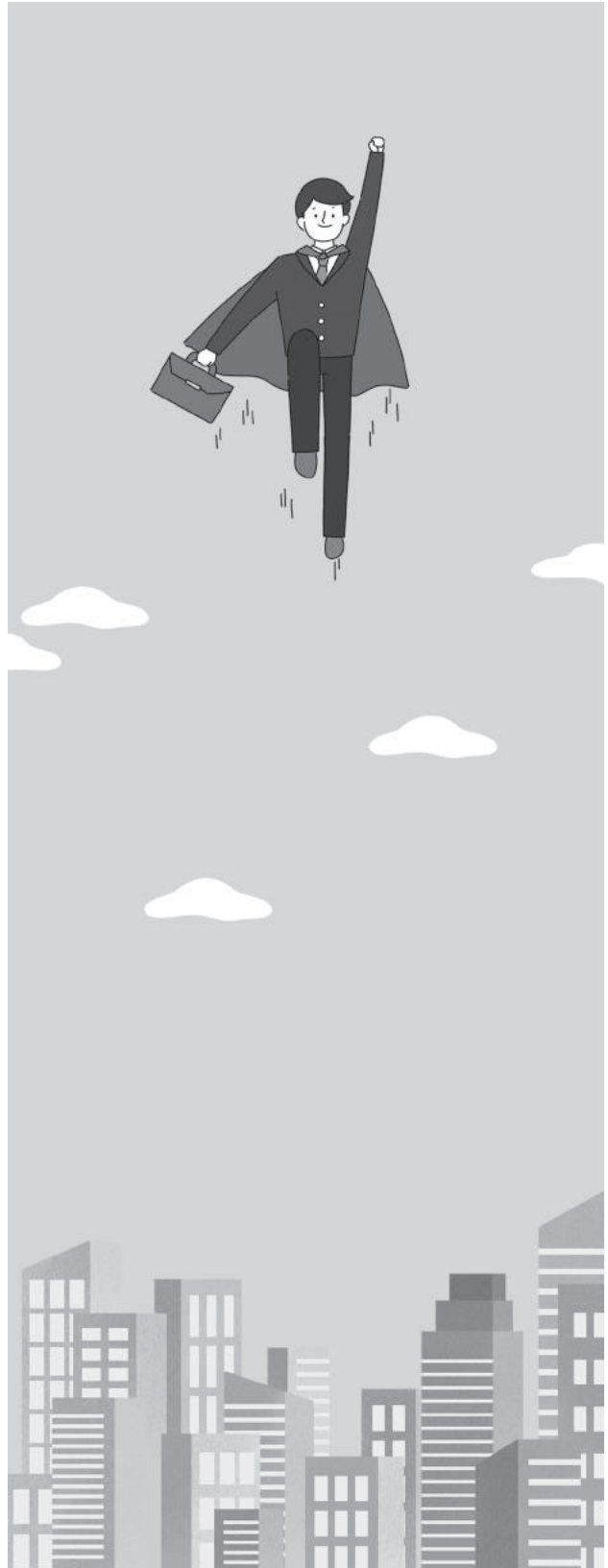


도서명 | **확신의 덫**

저 자 | 장프랑수아 만초니
장 루이 바르수

출판일 | '14. 3. 26

- (주요내용) 부하직원이 한 번 실패를 하거나 낮은 성과를 내면 상사는 직원이 성공할 의지가 없다거나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등, 어떤 이유에서든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들은 성과가 낮은 직원으로 낙인찍힌 직원들은 상사의 낮은 기대치에 맞는 성과를 내게끔 유도되고, 결국에는 개인도 조직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역학구도를 '필패 신드롬'이라 명명했다. 어느 조직이나 필패 신드롬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주관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인식하려는 확증편향 때문이다. 이 책은 개인이 또 조직 전체가 어떻게 '확신의 덫'에 빠져드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확신의 덫을 해체할 수 있는 처방전까지 제시해준다.



알아두면 유익한 깨알지식 (여름철 냉방병 예방법)



- ① 외부와 실내의 온도차를 5~6℃ 이내로 유지하기
→ 적정 실내온도는 24~27℃ 내외



- ② 환기를 자주 시키기
→ 3~4시간에 한번씩 10분정도 환기



- ③ 에어컨 청결 유지하기
→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필터를 최소한 2주에 한번정도 청소



- ④ 얇은 겹옷 준비하기
→ 찬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따뜻한 음료나 차 마시기



- ⑤ 면역력 높이기
→ 충분한 휴식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먹기



참고 청년 일자리 대책 7대 핵심과제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부)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연 900만원 3년 지원(연 9만 명 지원)

2 청년고용증대세제(고용부)

- 지원대상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수가 증가한 기업
- 지원내용
 -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최대 1,100만원 세액공제 (연 3.7만명 지원)

3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 지원대상
 -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생애최초 취업한 청년
 -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3,000만원 자산형성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기부)

- 지원대상
 -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
 - (기업)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면제(기재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취업(신규/재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지원내용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年 150만원 한도)

6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 지원(고용부)

-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생애최초 취업한 年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3,500만원까지 1.2%(소득 무관) 융자
 - * (대출한도) 보증금 3,500만원 이하는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
 - (기간) 최장 4년(2년+2년) 이용가능(만기일시상환)

7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지원(고용부)

- 지원대상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 중 (신규/재직)인 청년
- 지원내용
 - 月 5만원씩 '18.7월부터 '21년말까지 지급
 - *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유류) 등에 사용이 가능한 교통비 카드로 지급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도 안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에 대하여 3년간 기업 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 면제!



기업 성공 도우미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참고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지원법 제33조, 제39조의3 제1항)

- 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36개 법률 71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
- 적용 범위**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7호의 '공장'
- 부담금 면제**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
 -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창업 7년 이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 창업 5년 이내
 - 농지보전부담금(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1항) : 창업 5년 이내
 - 대체초지조성비(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1항) : 창업 5년 이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지방청명	담당과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2-2110-6305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51-601-5113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53-659-2209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1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90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16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22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52-210-000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13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2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3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18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제도 안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에 대하여 3년간 기업 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을 면제

*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청 대상
2007년 8월 3일부터 2022년 8월 2일 기간에 창업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 또는 환급 가능, 단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환급청구권은 소멸

신청 방법
해당 부담금 부과기관에 면제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부담금의 면제)



부담금 면제 절차



부담금 면제신청서 양식 :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

01.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9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02. 창업 여부를 확인한 지자체장은 창업일과 부담금 면제기간을 명기하여 창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03. 공문을 받은 창업자는 동 문서를 부담금 부과기관에 제출하여 면제를 신청
04. 부담금 부과기관은 이를 근거로 부담금 면제 처리

부담금 현황(12개)

부담금명	감면대상	부과기관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인천, 군포, 용인, 하남, 문경)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 신청자	광역 및 기초지자체(5곳) 상수도 관련 부서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기초지자체 공장설립 부서 및 농지전용 부서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농협경제지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전기사용자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제조업 영위 창업자에 대해 기본부과금 면제	광역지자체 환경관련 부서
수질배출부과금	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제조업 영위 창업자에 대해 기본부과금 면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 영위 창업자	한국환경공단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한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관할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금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낙동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영산강·섬진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기초지자체 공장설립 부서 및 산지전용 부서